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80474]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8. 05. 15.]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 09. 23.]

아랑고고장구 정보공개서

아랑고고장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주식회사 아랑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41, 지하1층(하안동, 삼성빌딩)

TEL : 02-2619-4666

FAX : 02-2619-4660

E-mail : a-rang4666@nate.com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별첨 1] 재무제표

[별첨 2]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별첨 3] 가맹금 예치신청서

[별첨 4]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자필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주식회사 아랑	아랑고고장구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41, 지하1층(하안동, 삼성빌딩)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9. 09. 06.	2019. 09. 10.	조승현	02-2619-4666	02-2619-4660
	법인등록번호	134911-0091685	사업자등록번호	743-88-01308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대표이사)	조승현	아랑고고장구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41, 지하1층(하안동, 삼성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조승현	02-2619-4666	02-2619-4660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조정아	아랑고고장구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41, 지하1층(하안동, 삼성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조승현	02-2619-4666	02-2619-4660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을 인수함	아랑고고장구	아랑고고장구	2020. 02. 03.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41, 제비1호(하안동, 삼성빌딩)	조승현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아랑고고장구]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아랑고고장구	주로 [아랑고고장구]의 독창적인 장구장단 및 안무를 즐기는 동호회를 대상으로 예술활동장소(연습실, 스



		튜디오 등)를 제공하는 한편, 고고장구 지도사 자격증 준비생을 대상으로 30일 미만의 자격증 대비 트레이닝을 운영하는 가맹점입니다.
상 호	아랑고고장구 00분원	당사는 보통 해당 지역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명칭 : 고고장구 41류 (도형복합, 일반상표) 등록번호: 40-1372212
상표(서비스표)	아랑고고장구	명칭 : 아랑고고장구 41류 (한글상표, 일반상표) 등록번호: 40-1446129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VAT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303,466	23,359	280,107	485,582	49,118	43,500
2022년	433,866	116,487	317,379	693,978	-22,878	37,272
2023년	506,660	147,374	359,286	941,505	45,184	41,906

※ 재무상황의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 천원, VAT 미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조승현	대표이사	2013. 11. 01. ~ 2019. 05. 16.	예술하우스 타플 대표	사업 총괄
			2019. 05. 17. ~ 2020. 02. 02.	아랑고고장구 대표	사업 총괄
			2019. 10. 30. ~ 현재	주식회사 아랑 대표이사	사업 총괄
가맹사업 관련 임원	조정아	사내이사	2018. 03. 01. ~ 2019. 05. 16.	예술하우스 타플 직원	광명본원 관리
			2019. 05. 17. ~ 2020. 02. 02.	아랑고고장구 직원	광명본원 관리
			2019. 10. 30. ~ 현재	주식회사 아랑 이사	광명본원 관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	3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관계	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사용인 (대표이사)	조승현	가맹사업 경영	2017. 07. 22. ~ 2020. 02. 02.	아랑고고장구 대표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상표(서비스표)사용	등록	출원 4020170106198	조승현	2028.06.27.
		2018.06.27.	등록 40-1372212		
아랑고고장구	상표(서비스표)사용	등록	출원 4020180053734	조승현	2029.02.12.
		2019.02.12.	등록번호:		



			40-1446129		
고고난타교본	저작권 사용	등록	등록 C-2014-012148	조인숙	
		2014.05.27.			
고고장단교본	저작권 사용	등록	등록 C-2018-008453	조승현	
		2018.03.28.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다만 출원중인 상표는 현재 등록 심사 중에 있으므로 출원중인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아랑고고장구]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17년 07월 22일

※ 당사에 가맹사업을 양도한 아랑고고장구가 직영점(예술하우스 타플)을 최초로 시작한 날은 2013년 11월 01일입니다.

2. [아랑고고장구] 가맹사업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예술하우스 타플	아랑고고장구	조승현	2017. 07. 22. ~ 2019. 05. 16.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949번길 9(광명동, 지층)
아랑고고장구	아랑고고장구	조승현	2019. 05. 17. ~ 2020. 02. 02.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41, 제비1호(하안동, 삼성빌딩)
주식회사 아랑	아랑고고장구	조승현	2020. 02. 03. ~ 현재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41, 지하1층(하안동, 삼성빌딩)

3. [아랑고고장구]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아랑고고장구	기타 교육	30일 미만의 고고장구 지도사 자격증 대비 트레이닝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아랑고고장구]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90	89	1	98	97	1	99	98	1
서울	5	5		5	5		7	7	
부산	6	6		6	6		8	8	



대구	6	6		6	6		9	9	
인천	2	2		2	2		2	2	
광주	3	3		2	2		3	3	
대전	5	5		4	4		2	2	
울산	5	5		7	7		7	7	
세종	1	1		1	1		0	0	
경기	17	16	1	14	13	1	12	11	1
강원	2	2		2	2		4	4	
충북	3	3		4	4		4	4	
충남	4	4		5	5		3	3	
전북	5	5		7	7		7	7	
전남	3	3		4	4		4	4	
경북	11	11		13	13		15	15	
경남	11	11		15	15		11	11	
제주	1	1		1	1		1	1	

5. 최근 3년간 [아랑고고장구]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65	24	0	0	3	89
2022	89	15	5	2	0	97
2023	97	16	6	9	1	98

6. [아랑고고장구]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 현황

- 해당사항 없음.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98	-	-	-	-	-	-	



서울	7	-	-	-	-	-	-	-
부산	8	-	-	-	-	-	-	-
대구	9	-	-	-	-	-	-	-
인천	2	-	-	-	-	-	-	-
광주	3	-	-	-	-	-	-	-
대전	2	-	-	-	-	-	-	-
울산	7	-	-	-	-	-	-	-
세종	0	-	-	-	-	-	-	-
경기	11	-	-	-	-	-	-	-
강원	4	-	-	-	-	-	-	-
충북	4	-	-	-	-	-	-	-
충남	3	-	-	-	-	-	-	-
전북	7	-	-	-	-	-	-	-
전남	4	-	-	-	-	-	-	-
경북	15	-	-	-	-	-	-	-
경남	11	-	-	-	-	-	-	-
제주	1	-	-	-	-	-	-	-

※ 당사는 물론 이전 가맹본부도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당사는 물론 이전 가맹본부도 각 가맹점의 매출 pos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상 필요한 물품의 대부분을 임의로 선택한 거래처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에서 필수로 공급받는 몇 가지 물품(장구세트 등)도 매월 소비되는 원재료가 아니라 1회 구입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집기·비품이어서 그 거래량을 기초로 각 가맹점의 매월 회원 수를 추정할 수 없으며, 각 가맹점의 회원이용금액도 각기 상이하여 당사가 필수로 공급하는 물품의 거래금액 기초로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함을 양지바랍니다.

8. 아랑고고장구]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아랑고고장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개)	평균 영업기간(일) (소수점이하 버림)
2023	98	1,183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아랑고고장구]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9.]항목을 참고하십시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6,300	 (비공개)	-	
광고	소계					
	TV					
	라디오					
	인터넷					
판촉	소계					
	1월 행사					
	추석 행사					

※ 당사는 [아랑고고장구]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는 이를 구체적으로 세분하기 어려워 손익 계산서상 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 포함)의 총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예치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의 모든 우리은행 지점(창구) 또는 인터넷 뱅킹에서 가능합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신림남부지점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434(신림동)	02-869-044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금 예치방법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별첨3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교부하고, 우리은행에서 알려주는 가맹금에스크로(예치) 가상계좌로 가맹금을 입금(예치)하면 됩니다.

우리은행 가맹금에스크로 서비스에 접속하여 가맹금에스크로(예치) 가상계좌를 발급받는 업무는 당사가 처리합니다.

귀하는 또한 예치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 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아랑고고장구]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점포설비공사비용, 점포기기 및 비품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입금 및 개원 교육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미예치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입금>

(단위 : 천원, VAT 포함)

구 분	금액	반환조건	지급기한
『아랑고고장구』가맹사업 가입비	₩1,100	1. 가맹사업법 제10조(가맹금의 반환)에서 정한 경우 법률에 따라 반환. 2.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경우 반액 반환. 단, 분원 영업 개시 이후에는 반환 되지 않음.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 동안 『아랑고고장구』의 영업표지 및 영업시스템 이용료	₩1,100	1. 가맹사업법 제10조(가맹금의 반환)에서 정한 경우 법률에 따라 반환.	계약체결 시
합 계(약보비 별도)	₩2,200		(개원비용 별도)



<개원 교육비>

(단위 : 천원, VAT 포함)

구 분	금액	반환조건	지급기한
개원 교육비	₩8,800 12주 (1주1일, 1일2시간)	1. 가맹금반환조건과 동일한 사유로 반환 가능(교육준비에 소요된 비용공제) 2. 다만, 교육 개시 후 반환 불가	계약체결 시

2) 보증금은 없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금일천백만원(₩11,000,000 VAT포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VAT 포함)

구 분	신규가입자	기존가맹점 양수자(잔여기간)
합 계	₩11,000	가맹점 양수의 경우는 예치대상 아님
가입금	₩2,200	
개원 교육비	₩8,8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포규모 : 99.17㎡기준) (단위 : 천원, VAT 포함, 소수점이하 버림)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53,900	₩1,796			
간판설치	귀하가 정한 공급업체 (미지정)	₩3,300	₩110	업체와 협의	반환되지 않음	당사의 시방서에 따라 시공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귀하가 정한 공급업체 (미지정)	₩44,000	₩1,466	업체와 협의	반환되지 않음	당사의 시방서에 따라 시공
초도물품	가맹본부	고고장단 약보	고고장단	개원 전	1. 교육실시 전에 계약해지와 함께	필수



(약보)		10부 (₩165) 이상	약보 (₩5)		반환요구 2. 약보를 개봉하 지 않을 것	
초도물품 (아랑고고장 구 티셔츠 & 두건 set)	가맹본부	50 set (₩715) 이상	₩23	개원 전	반환되지 않음	필수 (아랑고고장 구 로고 인쇄)
초도물품 [아랑고고장 구 장구 set (장구, 장구채, 장구대, 장구가방, 장구대가방, 복채)]	가맹본부	10 set (₩2,420) 이상	₩80	개원 전	반환되지 않음	필수 (아랑고고장 구 로고 인쇄)
본원 공연단의 오픈 홍보공연	가맹본부	₩1,100 (공연규모에 따라 증가할 수 있음)	₩36	개원 전	반환되지 않음	선택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귀하가 정한 공급업체 (미지정)	₩2,200	₩73	업체와 협의	반환되지 않음	선택, 비품 등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귀하가 해당 업체와 직접 상담하여 정하는 계약에 따릅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비고
가맹희망자	점포 미보유 시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권고 → 가맹희망자가 최종 결정. 점포 보유 시 : 당사 브랜드와의 적합성 판단	당사는 귀하에게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입지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의사결정권은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관계법령상 기준 외에 특별한 기준 없음	당사의 경영마인드와 부합할 것, 민법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관계법령상 기준 외에 특별한 기준 없음.	민법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이 아닐 것, 근로기준법상 채용기준을 준수할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아랑고고장구]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가맹금의 분할납부

해당사항 없음.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부담기준은 [V.8.1])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계약 갱신시 연회비1)	가맹본부	1. 2022년 연회비 : ₩1,210 2.해마다 변경가능. (매년 12월 15일에 당사가 정하여 통지함)	재 계약 - 별도협의. 법정갱신 - 갱신 후 지체없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시 미경과 기간 상응하는 대가 반환		가맹계약 제16조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협의 후 분담	별도협의	별도협의	소멸성 비용	가맹계약 제38조 및 제39조
교육훈련비 (연중 보수교육)	가맹본부	무상				개원 후 1년간 매주 실시하는 본원의 무상 보수교육
교육훈련비 (특별교육)	가맹본부	실비	교육 실시 10일 전	교육 실시 5일 전 반환요구(준비비용 공제하여 반환)	교육 실시 후	가맹점의 요청
신작품 교육	가맹본부	실비	교육 실시 10일 전	교육 실시 5일 전 반환요구(준비비용 공제하여 반환)	교육 실시 후	비정기, 권장
경영지도비	가맹본부	실비	경영지도 실시 10일 전	경영지도 실시 5일 전 반환요구(준비비용 공제하여 반환)	경영지도 실시 후	가맹계약 제35조
영업표지 변경비용	귀하가 정한 공급업체 (미지정)	가맹점 내의 간판 변경, 설비 변경 등의 비용은 협의하여 분담.	별도협의	별도협의	별도협의	BI·CI 개발 및 투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본부가 부담 (가맹계약서 제11조)
점포환경 개선비용	귀하가 정한 공급업체 (미지정)	공사범위에 따라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별도공사 계약에 따름	별도공사계약에 따른 적절회나 취소	공사 개시 후	가맹계약서 제44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12%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1) 계약 갱신시 연회비는 갱신되는 계약기간동안 영업표지 사용료 및 영업시스템의 계속적 이용료입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 (단위 : 천원, VAT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 당사가 재고관리·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를 감독하는 내역

귀하는 회원에 관한 회계장부 및 직원에 관한 인사기록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을 하여야 하며, 당사가 요청하는 경우 아래의 자료를 당사가 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당사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① 피고용인 등 인적구성 현황
- ② 매출 및 고객현황
- ③ 홍보, 마케팅 등 광고 및 영업현황
- ④ 기타 판매전략 수립을 위하여 당사가 요청하는 자료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당사의 가맹계약기간은 기본 [1년]이고, 갱신하는 경우 기간은 [1년]입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의 갱신요구권을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하는 경우, 물가상승 등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가맹계약 제 16조의 연회비는 증액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귀하가 당사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30일 전에 해당 사실을 알립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일을 기준으로 20일 이전에 당사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편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계약기간 중 귀하가 운영하는 [아랑고고장구]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당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양도 전 반드시 당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당사는 양수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합니다.

가맹계약 제50조에 따라 양수인은 당사로부터 신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양도유형에 따라 가맹금(가입금 및 교육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유 형	신규계약형 양도 (제49조 제6항)	잔여기간형 양도 (제49조 제5항)	비고
합 계	₩11,000	₩8,800	
『아랑고고장구』가맹사업 가입비	₩1,100	면제	신규계약형 양도에 의 한 가맹계약은 가맹사 업법 제13조 제2항(갱 신요구권)의 적용에 있어서 최초계약으로 본다.
계약기간 동안 『아랑고고장구』의 영업표지 및 영업시스템 이용료	₩1,100	면제	
개원 교육비	₩8,800	₩8,800	
가맹금예치제	○	X	

※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6.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본 계약이 해지, 기간만료, 갱신의 거절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귀하는 아래 각 항의 후속 조치를 즉시 이행하거나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① 귀하께서는 당사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간판 등의 제반 영업표지를 즉시 철거하거나 제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화번호등록(114등록 및 온라인 포털사이트 내 지역정보) 및 기타 홍보사이트의 관련내용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당사의 상호나 상표 등 당사의 가맹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중지하셔야 합니다.
- ② 제①항의 철거 또는 제거의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귀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③ 귀하께서는 계약 종결을 이유로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가 이미 제공한 공급물품,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에 대하여 당사에게 반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에는 귀하는 물품의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공급받은 물품의 일부를 당사와 협의하여 반품할 수 있습니다.
- ④ 본 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귀하께서는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의 대금과 기타 귀하께서 당사에게 납부할 비용 일체를 현금으로 완제하여야 합니다.
- ⑤ 귀하께서는 점포운영과 관련하여 당사로부터 제공받거나 대여 받은 가맹점 운영 규칙, 문서, 도면, 도서 등 관계서류 등을 당사로 반환하셔야 합니다.
- ⑥ 귀하께서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 등 영업비밀이나 고객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⑦ 귀하께서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당사의 명성과 브랜드의 가치를 저해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⑧ 귀하께서 본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당사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할 경우, 무단 상표 사용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아랑고고장구]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2024년 4월 기준) (단위 : 천원, VAT 포함)

	<p>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p>
------------------------------------------------------------------------------------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2023년 12월 기준) (단위 : 천원, VAT 포함)

	<p>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p>
-------------------------------------------------------------------------------------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아랑고고장구]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아랑고고장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2) 당사가 [아랑고고장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보호하고 브랜드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아랑고고장구의 작품만을 전수하여야 하고, 당사의 창작품을 임의로 변경하여 전수할 수 없습니다.

※ 귀하가 분원에서 창작한 작품은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전수할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신 작품 교육 등 각종 지원중단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해당사항 없음.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에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천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자격증 트레이닝 (분원 트레이닝)	100	유선 공지	2022년 12월 기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변경의사를 통지하고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주로 [아랑고고장구]의 독창적인 장구장단 및 안무를 즐기는 동호회를 대상으로 예술활동장소(연습실, 스튜디오 등)를 제공하는 한편, 고고장구 지도사 자격증 준비생을 대상으로 30일 미만의 자격증 대비 트레이닝을 운영하는 업종	주식회사 아랑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표시 방법
<p>영업지역은 분원소재지가 있는 동(행정동을 말함, 이하 같다)·읍·면과 인근 동·읍·면을 포함하여 4개 행정동(시지역의 경우) 또는 2개 읍면(군지역의 경우)을 기준으로 영업지역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지역의 인구 및 상권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증감할 수 있으며, 당사가 인구·행정구역·거리·상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리 영업지역을 구분하고 그 기준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지역을 선택함</p> <p>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특수상권의 경우에는 "을"의 영업지역을 "갑"과의 합의하에 결정하기로 하며, 합의 내용을 제49조 특약사항에 규정하고, 또한 도면으로 표시하여 계약서에 별도 첨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왕복 6차선 도로를 둔 구별 상권 2. 신도시 지역의 단지로 구별되는 상권 3. 전철역 간(間)의 구별 상권 4. 서울 도심의 복합상권으로 강남역 상권, 교대역 상권, 역삼동 상권, 신사동 상권, 압구정동 상권, 청담동 상권, 논현동 상권, 대학로 상권, 종로 상권, 명동 상권, 신촌 상권, 대학 부근 상권 등 5. 제4항과 유사한 광역시, 도, 시군구 내 도심복합상권 등 6. 기타 특수상권 : 백화점, 대형쇼핑몰, 대형할인점, 종합병원, 대학교, 역사, 15층 이상 대형빌딩의 로비 등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3) 영업지역을 재조정(변경)하는 경우의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합의를 하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계약 만료 180일~90일 전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 → 통지 후 30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 ※ 상기한 재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과정에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축소·분할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부당한 계약변경행위에 해당되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① 제3호 및 시행령 별표 3. 다목)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공정위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아랑고고장구]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아랑고고장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	-	0%	0%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알 수 있는 매출 pos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른 업종과 달리 공급원재료 등을 통한 매출액 추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 따라서 [아랑고고장구]의 가맹점을 통한 매출액과 기타 오프라인 매출액의 비중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당사의 온라인 판매 매출액은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아랑고고장구]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1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계약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맹계약서 제13조 제②항>

(다음 가맹계약서의 "갑"은 당사를, "을"은 귀하를 의미합니다.)

"갑"은 "을"이 본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본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을"이 본 계약상의 가맹금이나 물품대금 등의 채무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아랑고고장구』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등을 "을"이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아랑고고장구』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중요한 영업방침 등을 "을"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 "을"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나. "을"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제공하는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기준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갑"의 『아랑고고장구』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라. "갑"이 "을" 등 『아랑고고장구』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 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①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귀하가 당사의 사전승인 없이 가맹점의 명칭이나 소재지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제45조
○ 귀하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45조
○ 귀하가 영업표지의 변경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제45조
○ 귀하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제45조
○ 귀하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5조
○ 귀하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5조
○ 귀하가 당사의 대리인, 피용인 또는 지점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제45조
○ 귀하가 인허가 관련 법령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제45조
○ 귀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적인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제45조



○ 귀하가 연회비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5조
○ 귀하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의 경영지도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45조
○ 귀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작품의 내용을 변경하여 영업의 표준화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45조
○ 귀하가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 등을 연체한 경우	제45조
○ 귀하가 당사와 약정하거나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얻은 판촉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제45조
○ 귀하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운영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45조
○ 귀하가 보고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45조
○ 귀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관리를 위한 협의나 시설의 교체를 거부하는 경우	제45조
○ 귀하가 당사의 감독을 방해한 경우	제45조
○ 귀하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45조
○ 귀하가 가맹점추가개설규정에 위반한 경우	제45조
○ 귀하가 당사의 승인 없이 가맹점영업을 양도, 임대, 위탁경영하거나 가맹점운영권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제45조
○ 귀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제45조
○ 귀하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당사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제45조
○ 귀하가 개점승인 없이 영업을 개시하거나 귀하의 귀책사유로 개점 예정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제45조

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③ 다음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서 제48조 제2항에 따라 즉시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	관련계약조문
○ 귀하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	제45조 제2항



된 경우	제1호
○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가 된 경우	제45조 제2항 제2호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5조 제2항 제3호
○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1)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3)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45조 제2항 제4호
○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5조 제2항 제5호
○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38조 제1항에 따른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38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5조 제2항 제6호
○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45조 제2항 제7호
○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45조 제2항 제8호
○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45조 제2항 제9호

④ 다음의 경우 귀하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사유	관련계약조문
-------------------------	---------------



○ 당사가 가맹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귀하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최고하여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제45조 제3항
○ 당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당사의 재정상태가 객관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가맹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합리적·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즉시 해지) 1. 당사가 파산한 경우 2. 당사가 발생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3. 당사가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체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행정적 처분을 당한 경우	제45조 제4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와 협의한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영업표지 등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1조
○ 영업지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2조
○ 가맹사업법의 개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제54조
○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제54조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 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승인 요청(양도예정일 2개월 전) -> 당사 담당자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양수인교육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승인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함.

- ① 귀하는 제3자에게 가맹계약상의 가맹점운영권을 양도, 임대, 위탁경영 또는 담보제공(이하 "영업양도 등"이라 합니다)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업자간의 대표자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최초 『아랑고고장구』가맹계약서에 동업자의 인적사항을 명기한 경우로 한정합니다.)에는 귀하는 당사에 대하여 계약명의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불가피하게 자신의 가맹점에 대하여 영업양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께서는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당사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③ 당사는 제2항의 승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확답을 합니다.
- ④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귀하)의 당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 ⑤ 계약기간 중 귀하가 영업(잔여기간)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영업양수인은 가입금의 지급을 면제받습니다.
영업양수인이 "개원 교육비"를 당사에 완납하고 인·허가 준수사항 및 교육·훈련의 의무를 이행하면 당사는 귀하와 양수인 사이의 가맹점영업의 양도·양수를 최종 승인합니다. 위 제1항 단서의 동업자사이의 명의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⑥ 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당사는 완전한 계약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당사와 신규계약에 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영업양수인이 특별히 개원지원을 원할 경우에는 개원지원대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영업양수인의 부담>

(단위 : 천원, VAT 포함)

유 형	신규계약형 양도 (제49조 제6항)	잔여기간형 양도 (제49조 제5항)	비고
합 계	₩11,000	₩8,800	
『아랑고고장구』가맹사업 가입비	₩1,100	면제	신규계약형 양도에 의한 가맹계약은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갱신요구권)의 적용에 있어서 최초계약으로 본다.



계약기간 동안 『아랑고고장구』의 영업표지 및 영업시스템 이용료	₩1,100	면제	
개원 교육비	₩8,800	₩8,800	
가맹금예치제	○	X	

- ⑦ 당사는 『아랑고고장구』가맹점운영권의 양도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승인 전후를 불문하고 양도인(귀하)의 투자비 내역, 영업 현황 등의 자료를 양수희망자 또는 양수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⑧ 귀하께서 대표자의 명의변경 없이 분원소재지를 이전하여 계속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당사의 사전 서면승인을 얻어야 하며, 귀하의 이전승인의 요청에 대하여 당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승인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 ⑨ 당사의 서면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 등은 당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당사는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⑩ 당사의 서면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양수로 인하여 발생한 양수인의 손해에 대하여는 귀하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 ⑪ 귀하가 당사의 직영점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당사와 신규계약에 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제6항의 신규계약형 양수인의 경우와 같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인이 승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의 가맹점 영업양도 등에 대한 당사의 승인에 관한 절차규정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상속이나 대리행사 등의 승인에 준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인의 승계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이 사전 통보(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 -> 당사의 승인 ->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 이수 ->완료	상속인은 모든 가입금 면제. 개원 교육비는 부담하여야 함.
대리행사, 업무위탁, 동업	본부 승인시 가능	본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 사업자가 사전 통보 -> 당사의 승인 ->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 이수 ->완료	
담보설정	불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 전 지역]에서 귀하가 귀하의 명의 또는 계산으로 [아랑고고장구]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 전 지역]에서 귀하가 귀하의 명의 또는 계산으로 [아랑고고장구]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가맹본부의 주요지분(10%이상)을 보유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아랑고고장구와 같이 장구기술을 전수하는 교육업종 및 장구예술활동을 하는 업종	가맹점 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자 검토(시장조사 포함, 15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또한 귀하는 계약종료 후 1년간 [귀하의 영업지역으로 설정되었던 지역내]에서 귀하의 명의 또는 계산으로 [아랑고고장구]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아랑고고장구] 의 영업시간이나 영업일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종업원수	직접근무여부
분원장 자율	직접 근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아랑고고장구]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분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분원의 운영 전반(약보관리, 회원 관리, 청결 및 시설유지관리, 프로그램관리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아랑고고장구]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 및 지역 단위의 공동광고 및 공동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 및 판촉에 대하여는 그 광고 및 판촉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50%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에 관한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

구 분	성 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전국단위 (광고)	회원모집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를 전국 가맹점사업자들이 균분	1. 광고의 목적·횟수·시기·매체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 및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광고계획을 당사가 수립합니다. 2. 당사는 위 광고계획과 지출할 광고비 중에서 각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액을 광고계약 30일 전까지 각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통지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는 통지 후 10일 이내에 광고분담금을 지급합니다. 4.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할 수 있습니다.
	회원모집광고+가맹점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를 전국 가맹점사업자들이 균분	
	가맹점모집광고	전액	없음	
지역단위 (광고)	회원모집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를 해당지역 가맹점사업자들이 균분	1. 광고의 목적·횟수·시기·매체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 및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광고계획을 당사가 수립합니다. 2. 당사는 위 광고계획과 지출할 광고비 중에서 각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액을 광고계약 30일 전까지 각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통지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는 통지 후 10일 이내에 광고분담금을 지급합니다. 4.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할 수 있습니다.
	회원모집광고+가맹점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를 해당지역 가맹점사업자들이 균분	
	가맹점모집광고	전액	없음	

<판촉>



구 분	분담 비율	절 차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공동판촉 (전국단위, 지역단위)	공동판촉활동에 소 요되는 비용은 당 사와 가맹점사업자 들이 별도로 협의 하여 분담액을 정 합니다.	1. 공동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당사는 판촉 행사의 주요내용(판촉시기, 판촉방식,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비용분담 기준)을 포함한 판 촉계획을 사전에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제공합니 다. 2. 판촉계획에 대하여 당사와 가맹점사업자들이 협의하여 분담액, 지급방법 등을 정합니다.

당사가 공동광고 및 공동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사가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고 그 집행 내역을 귀하에게 통보하며, 귀하는 집행내역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① 귀하는 [아랑고고장구] 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광고 및 판촉활동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그 활동의 범위가 자기의 영업지역 내의 경우에는, 귀하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 자신의 비용으로 단독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 그 활동의 범위가 자기의 영업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귀하는 당사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지역의 다른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 하에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④ 단독 광고 및 판촉활동을 위한 팸플릿, 전단, 카탈로그등의 제작은 『아랑고고장구』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⑤ 단독 광고 및 판촉활동을 동영상 등의 제작 및 배포(유튜브 등 온라인 게시 포함)는 『아랑고고장구』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서 귀하의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



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① 귀하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가맹계약 제19조(비밀유지의무), 제20조(영업금지의무)규정을 위반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손해배상 외에 위약벌로써 금 일천만원(₩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영업을 개시되기 전에 당사의 귀책사유 없이 귀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 **손해배상으로 금 삼백만원(₩3,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③ 영업 중에 당사의 귀책사유 없이 귀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당사의 동의 없이 영업을 양도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하는 당사에 **손해배상으로 금 삼백만원(₩3,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④ 당사 또는 당사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가맹계약에 따라 양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연12%)**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4~53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 계		90~100일(점포개발 및 상권분석기간 제외)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 홈페이지, 방문 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즉시	
사업 설명·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및 인근 10개가맹점현황과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14일 이후 계약체결)	(변호사 및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3일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1일	
개원 교육	- 장구연주노하우 교육 - 경영노하우 교육	12주(1주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5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인테리어 공사	- 공사실시, 기타 설비	20일	
집기 및 상품 입고	- 악기, 테이블, 소파, 초도물품, 기타 집기류	2일	
오픈	- 개점 및 영업개시(오픈 홍보 공연)	D-day	
가맹금 지급	-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개원 후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가맹계약체결 이후의 일정은 귀하와 계약한 공급업체와의 계약에 따릅니다.

※ 가맹계약체결 이후의 절차에서 당사는 개원 교육과 오픈준비지원에만 관여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① 당사와 귀하 간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조항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용하고, 사회통념과 조리에 따라 처리합니다.
- ② 당사자 간의 대화와 노력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



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원만하게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각기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④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라 처리합니다.



Ⅷ.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p>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p><분할지급시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환경개선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 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가맹점 오픈시 제공되는 오픈지원인력 및 홍보공연 등은 모두 유상으로 그 금액은 가입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판촉 및 개별판촉의 경우 역시 유상입니다. 다만 당사가 제안하는 공동판촉의 경우 그 비용분담 및 판촉내용에 대하여 당사와 가맹점사업자들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합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가맹계약 제35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경영 지도 요원 파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경영지도 1. 계약이행(Contract):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통한 브랜드 명성 유지 여부 확인 2. 표준화 (standardization): 표준화된 『아랑고고장구』의 작품과 연주기법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작품과 연주에 대한 해설 및 지도	가맹본부는 1.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 2. 경영지도계획(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3. 경영지도실시 (가맹본부가 파견한 경영지도 요원의 경영지도 활동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는 우호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 4.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설명 → 5.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경영지도에 따른 조치사항인 판매방법 등 제반업무에 관한 개선방안을 존중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가맹점 부담
특별	위와 같음		가맹점



경영 지도 요원 파견		1. 가맹점사업자가 특별경영지도 요청 → 2. 가맹본부는 파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하면 → 3. 특별경영지도요원을 파견하여 경영지도실 시(구체적 절차는 위와 같다)	부담
----------------------	--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가 가맹점 경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시기	비고
개원 교육	1. 장구연주노하우 교육(장구연주기법, 장단, 안무 등) 2. 경영노하우 교육(교육기법교육, 고객서비스교육, 각종 운영노하우교육 등) 3. 개원 전후 12주의 집중교육	개별 또는 집단교육	개원 전후	필수
특별 교육	1. 장구연주노하우 교육(장구연주기법, 장단, 안무 등) 2. 경영노하우 교육(교육기법교육, 고객서비스교육, 각종 운영노하우교육 등)	개별 또는 집단교육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기간 및 시기는 협의)
신 작품 교육	개원교육 외에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갑이 새롭게 창작한 신 작품(신곡 장단 및 안무)에 대한 전수교육	개별 또는 집단교육	필요시 협의	권장

2. 교육·훈련의 시간 및 비용

[아랑고고장구]가맹점의 교육·훈련의 시간 및 비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VAT 포함)

구분	시간	비용(단위: 원)	비고
개원 교육	12주 (1주1일, 1일2시간)	₩8,800	필수
특별 교육	협의	실비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신 작품 교육	2주 이상 (1주1일, 1일2시간)	실비	권장

3. 교육·훈련을 받는 자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가 개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개점증인이 제한되거나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기	광명 본원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41, 지층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일)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713일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83,701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2023년말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직영점(1곳)의 매출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02-2619-4666)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재무제표

주식회사 아랑 2023년 재무제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주식회사 아랑 2022년 재무제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주식회사 아랑 2021년 재무제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2]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아랑고고장구]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예정지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 귀하가 장래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원명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별첨 3] 가맹금예치신청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5.7>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